

문서번호	도시디자인과-2204
결재일자	2016.2.16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
주무관	광고물담당	도시디자인과장	도시환경국장		
윤현진	조인현	대김익기	02/16 최성태		
협 조					

## 2016년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운영계획



2016 . 2

도시환경국  
도시디자인과

## 2016년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운영계획

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발주 운영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무주(無主)간판의 정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·불량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아름답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함

### I 추진 근거
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제1항,2항(위반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)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2(행정대집행의 특례)

### II 추진 필요성

- 난립된 불법간판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깨끗한 거리조성이 어려움.
- 일부 불법간판이 노후되어 보행자 안전 및 사고예방 차원에 정비가 필요함.

### III 세부 추진계획

- 불법간판 정비 철거사업 개요
  -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~ 2016.12.30
  - 사업내역 : 성북구 관내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간판 등 철거
    - ※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·불량, 무주(無主) 간판
  - 계약방법 : 수의계약
  - 소요예산 : 10,000천원

● 용역업체 : 광고회사 서울사인(대표:유영하)

※ 선정기준 :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의 등록 필한  
업체로써 유경험이 있는 전문업체

● 예산과목 : 경쟁력있는명품문화도시건설, 광고문화개선,고정광고물관리,  
민간이전(민간위탁금,불법옥외광고물 철거)

● 용역사업 주요 근무사항

▷ 용역수행방법

- 구청 ⇒ 옥외광고물 철거지시서에 의거 철거대상을 지정 통보
- 용역사업자⇒ 감독관의 철거지시서에 의거 철거작업 후 그 결과를  
옥외광고물 철거내역서를 제출

▷ 광고물 종류별 철거 물량

광고물 종류	계	가로형 간판	돌출형 간판	비 고
수 량	97	52	47	

▷ 용역인원 : 3명(용역원 2명, 운전자 1명)

※ 정비 경력이 있는 전문 용역원과 1톤이상 화물차(크레인) 운전 가능한 자

▷ 용역비 지급 : 사업종료 후 지급

(광고물 종류 및 규격별 계약된 정비단가 기준 적용 정비물량에 따른 비용을 용역  
업체 지급)

## IV 기 타 사 항

● 2016. 2월 : 상반기 정비용역 계약 체결 및 발주

● 2016. 3월 : 용역업체 사전교육 실시

● 2016. 11월 : 하반기 용역준공

· 첨부서식 : 별첨1~4(광고물 종류 및 규격별 철거 단가 및 신분증 등) 끝.